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의 안 번 호	45
------------	----

제출일자 : 2007. 4. 24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공무원 내부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북인주의 청산과 공무원 및 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 나. 엄정한 공직 윤리관 확립으로 깨끗한 사하구 구현과 소속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 나.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정함 (안 제2조)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다. 부조리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징계시효 만료일3월 이전까지로 함(안 제3조)

- 라. 감사담당은 신고자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5조)
- 마.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6조)
 - 보상금 지급액은 금품수수·개인별향응 액의 10배 이내, 구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추징·환수 결정액의 10%이내, 알선·청탁 시에는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법
- 나. 예산조치 : 2007년 추경예산 반영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7. 3. 30~4. 19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부산
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

제3조(신고기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의한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를 받은 구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8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유형(지급대상)	지 급 액
1	제2조제1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제2조제2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3	제2조제3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선이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이나 청탁 행위 신고 : 300만원 이하

※ 단,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서식]

부조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전화번호	
신고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				
내용				
증거				
서류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